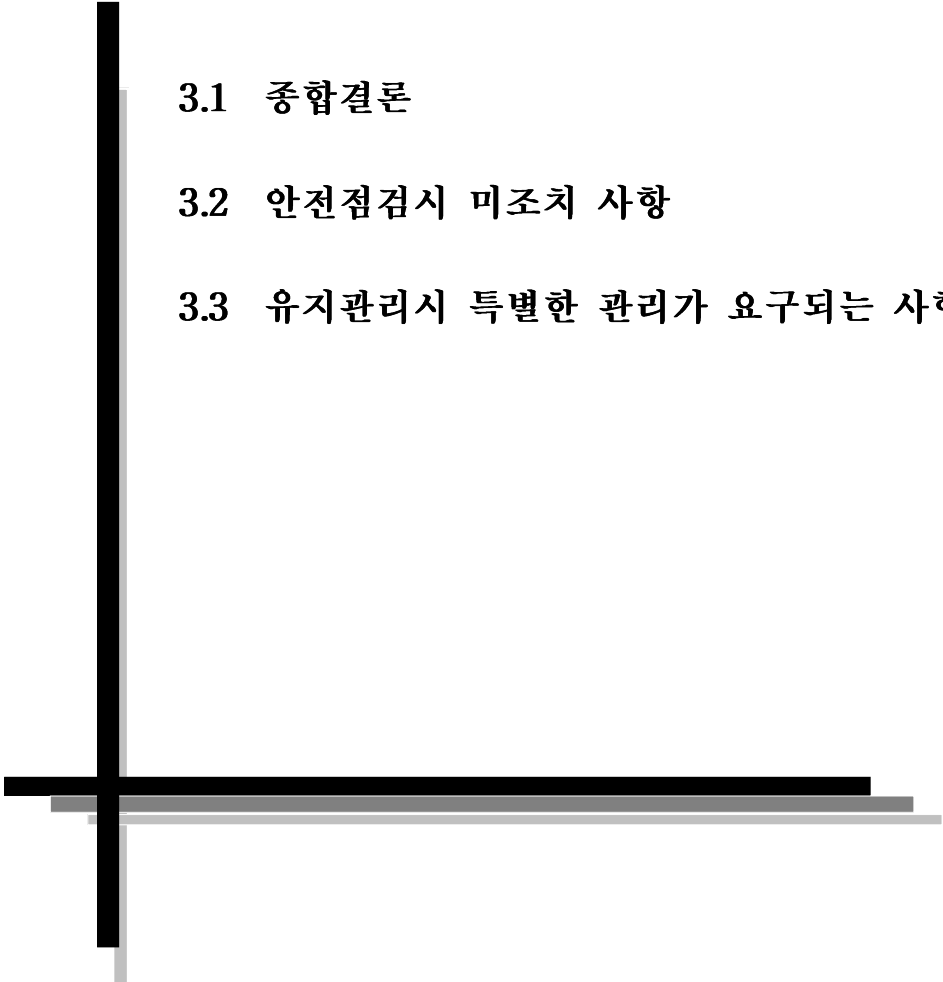




## 제 3 장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

---



3.1 종합결론

3.2 안전점검시 미조치 사항

3.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



## 제 3 장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

### 3.1 종합결론

◎ 『4단계 공항내부 연결도로공사[4-8공구]』 현장의 과업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“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, 시행령 제100조, 제101조, 시행규칙 제59조, 제60조”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『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7호』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준공(임시사용 포함)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등을 수행하고 안전점검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였다.

◎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관련하여 본 시설물은 2종시설물에 해당된다.

◎ 본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초기치 작성이 시행되었으며, 초기점검 조사결과 외관조사, 상세조사 등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상태평가 결과, A등급으로 분석되어 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’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

◎ 본 시설물은 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상 2종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
### 3.2 안전점검시 미조치 사항

◎ 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,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결함 발생은 없는 상태이다. 이후,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인 주의관찰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유지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.

### 3.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

◎ 준공 후 유지관리방안으로는 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를 기초로 삼아 주기적인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, 신규 손상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.

| 안전등급   | 정기안전점검    | 정밀안전점검    | 정기안전점검    | 성능평가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A등급    | 반기에 1회 이상 | 3년에 1회 이상 | 6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
| B, C등급 |           | 2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           |
| D, E등급 | 1년에 3회 이상 | 1년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           |

◎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
◎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(임시 사용승인 포함)을 기준으로 3년 이내(건축물은 4년 이내)에 실시하여야 하며,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(완료일)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.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.

◎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(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)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. 다만,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.

◎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,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「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. 다만,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 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.

다만, 증축,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,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,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